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 구정 방향 □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13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650호 2011. 9. 14.(수)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674호(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회							
람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9월 14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표준안이 일부 변경 통보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세입·세출외현금의 납부 시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방법 개선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에 관한 사항 중 단서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 재무회계과장, 전화 810-7149, FAX 810-7849)에게 서면(컴퓨터 통신을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가.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1호 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제76조제5항 중 “보통예금계좌” 를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 포함)” 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구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63호 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p> <p><u><단서 신설></u></p> <p>② ~ ④ (생략)</p> <p>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 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 ----- ----- -----.</p> <p><u>다만, 세입세출외현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1호 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보통예금계좌(<u>가상계좌 포함</u>)를----- ----- ----- -----.</p>